

인천지방법원 2020. 2. 13 선고 2018가단3033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공호선

피고인천광역시 옹진군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준선

변론 종결2020. 1. 30.

판결 선고2020. 2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1,922,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3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2019. 3. 12.부터 인천 옹진군 B 임야 5,656㎡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ㄴ' 부분 497㎡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31,7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,

다. 2019. 3. 12.부터 인천 옹진군 C 임야 348㎡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, 2, 18, 17, 1위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ㄴ' 부분 28㎡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,9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 중 측량 재감정 비용(2019. 6. 21.자 측량 재감정신청으로 인한 비용)은 원고가 부담하고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는 인천 옹진군 B 임야 5,656m² 및 C 임야 348m²의 소유자이다.

나. 인천 옹진군 B 임야 5,656m²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ㄴ' 부분 497m²(이하 'B 임야 도로부분'이라 한다) 및 인천 옹진군 C 임야 348m²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, 2, 18, 17, 1 위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ㄴ' 부분 28m²(이하 'C 임야 도로부분'이라 한다)는 종래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어 오다가, 피고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.

다. 위 각 도로부분의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할 때, 각 2014. 3. 12.부터 2019. 3. 11.까지 B 임야 도로부분 및 C 임야 도로부분의 보증금 없는 상태에서의 임료 상당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.

[B 임야 도로부분]

2014년도	2014.03.12.~2015.03.11.	413,500	34,450	
2015년도	2015.03.12.~2016.03.11.	355,600	29,630	
2016년도	2016.03.12.~2017.03.11.	318,730	26,560	
2017년도	2017.03.12.~2018.03.11.	343,530	28,620	
2018년도	2018.03.12.~2019.03.11.	381,300	31,770	
계		1,812,660		

[C 임야 도로부분]

2014년도	2014.03.12.~2015.03.11.	25,090	2,090	
2015년도	2015.03.12.~2016.03.11.	21,550	1,790	
2016년도	2016.03.12.~2017.03.11.	19,310	1,600	
2017년도	2017.03.12.~2018.03.11.	20,430	1,700	
2018년도	2018.03.12.~2019.03.11.	23,020	1,910	
계		109,400		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 내지 4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중부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 결과, 감정인 D의 임료감정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B 및 C 임야의 각 도로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도로부분의 사용·수익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, ① 2014. 3. 12.부터 2019. 3. 11.까지의 부당이득 합계액인 1,922,060원(= 1,812,660원 + 109,400원)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19. 3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② 2019. 3. 12.부터 피고의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장래의 부당이득으로서, B 임야 도로부분의 경우 월 31,770원(2019. 3. 12.부터 2019. 3. 11.까지 기간 동안의 월 차임 상당액이나,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동일한 액수일 것으로 추단된다. C 임야 도로부분의 경우도 같다.)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 C 임야 도로부분의 경우 월 1,9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(원고는 제4차 변론기일에서 측량 재감정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겠다고 진술하였는바, 소송비용 중 측량 재감정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에게

부담시킨다).

판사정진아

별지